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604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최수진 · 윤재옥 · 박정하
유용원 · 안철수 · 구자근
최보윤 · 우재준 · 고동진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며, 법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장애인 차별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장애인 차별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차별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약 187일에 이르는 등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

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 또는 제38조에 따라 진정한 사람에 대한 법률상담
2. 소속 변호사에 의한 제38조에 따른 진정의 대리
3. 소속 변호사에 의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신청의 대리
4. 소속 변호사에 의한 피해자의 소송대리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45조의2(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피해자 또는 제38조에 따라 진정한 사람에 대한 법률상담</u> <u>2. 소속 변호사에 의한 제38조에 따른 진정의 대리</u> <u>3. 소속 변호사에 의한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신청의 대리</u> <u>4. 소속 변호사에 의한 피해자의 소송대리</u> <p><u>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의 설치·운</u></p> |

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
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장애인차별법률지
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